

본 [도시가스 공급 안내 및 상호 협약서]는 공급신청서의 첨부서류로써, 당사의 공급검토 절차를 거쳐 공급신청을 의뢰한 고객으로부터 시설분담금 등의 제반 금액이 납부될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에 따라 제출하신 공급신청서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계약서』로 간주되며, 법적효력을 갖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 (목적)
본 [도시가스 공급 안내 및 상호 협약서]는 코원에너지서비스(주)(이하 "공급자"라 함)가 고객(이하 "수요자"라 함)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가스요금, 안전관리 등 가스공급과 관련된 제반 기준 및 규정을 안내하고, "수요자"는 이에 동의함으로써 상호 협약을 토대로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가스 공급 확정 시, 본 협약서를 『도시가스 공급계약서』로 활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가스 공급조건)

| | | | | | |
|---------|--|-------|---------|------|--|
| ① 공급 장소 | (시) | (구/군) | (읍/면/동) | (리) | (번지) |
| ② 사용 용도 | <input type="checkbox"/> 취사전용, <input type="checkbox"/> 개별난방, <input type="checkbox"/> 중앙난방용 | | ③ 세대수 | (세대) | ④ 건물명 |
| ⑤ 주택 유형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 | | | <input type="checkbox"/> 임대, <input type="checkbox"/> 분양 |

제3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공급규정 제6조에 의거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가스 사용 및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 시 명의는 사용시설의 소유자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성립 및 시설분담금)
① "수요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 2항 및 별표 2에 의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시설분담금(부가세별도-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공급계약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인입배관 공사비는 공급규정 제15조3항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가 50%씩 분담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단, 공사비는 회사에서 정부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공급규정 제4조 제17항에서 정한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까지로 한다.
③ 본 계약의 성립은 "수요자"가 제반 납부금액(시설분담금, 특별공사비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납하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시설분담금 산출기준 (근거: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 2항 및 별표2)

| 구분 | 일반 시설분담금 |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
| 납부대상 | 전체 가스사용자 | 취사전용 가스사용자 | 100M당 41세대 미만인 가스사용자(특별공사 별도) |
| 부담금액 | 적용단가(원/㎡) × 표준가스소비량(㎡) | 적용단가(원/㎡) × 표준가스소비량(㎡) | 적용단가(원/㎡) × 표준가스소비량(㎡) |
| 적용단가 | 22,490(원/㎡) | 78,690(원/㎡) (1세대당 최대부담액 : 196,725원) | [(표준투자비 × 배관연장 × 적용률) - (시설분담금회수액 + 요금상감가상각비 회수액)] ÷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총 표준가스소비량 |

제5조 (도시가스 공급검토 및 공급개시)
① "공급자"의 공급검토 과정에서 "수요자"의 공급요청 구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공급자"는 공급의무 및 가스공급시설 설치의무를 지지 않는다. 1.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 2에 의거, 가스공급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지역으로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이 가스공급시설 끝 부분의 배관에서 인접한 지역으로서 끝 부분의 배관에서 측정된 도시가스 압력이 1Kpa부터 2.5Kpa 까지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 2.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도로굴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로의 확장·포장이 계획된 경우, 지역 재개발이 추진예정인 경우 및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이 완료되면 쌍방향의에 의하여 가스공급을 개시한다. 단, 굴착허가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인허가 지연 등의 "공급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가스공급이 지연되는 경우, "공급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1. 본 계약 제4조의 제 분담금이 납부 완료되어야 한다. 2. "수요자" 소유의 도시가스 시설공사가 완료되고, 공급자의 공급 전 안전점검이 완료되어 도시가스 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③ "수요자"의 사정에 의해 보일러 시운전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 및 가스사용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제6조 (가스계량기의 설치)
① 원룸형 주택인 경우, 세대당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 및 관리한다. 이 때 "수요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거,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가스계량기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시가스 공급규정 14조 2항에 따라 개별 계량기는 점검, 검사, 취급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구분 | 계량기 등급 종류1 | 계량기 등급 종류2 | 계량기 등급 종류3 | 계량기 등급 종류4 | 총 계량기 등급 합계 |
|--------|------------|------------|------------|------------|-------------|
| 계량기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
| 계량기 개수 | (EA) | (EA) | (EA) | (EA) | (등급) |
| 합계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

제7조 (검침 및 사용량 산정)
① 검침일은 매월 "공급자"의 지정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취사용은 격월로 할 수 있다.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6조 ②항에 의한 경우는 별도 검침을 실시한다.
②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6조에 따라 "공급자"는 "수요자"의 가스계량기 검침에 의하여 "수요자"의 해당월 사용량을 결정한다. 이 때, 공급규정 제14조 ⑥에 따라 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온압보정장치에서 산출된 보정값으로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한다. 단, 고장 등으로 보정장치의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는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8조에 따라 사용량을 결정한다. 만약, 공급규정 제26조 ①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수요자" 중 별도의 보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하는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한 산정식에 의해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한다(사용량=검침량×온압보정계수). ③ "수요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가스사용량이 계량되지 않을 경우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전월사용량 또는 월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 (요금의 적용 및 납부)
① 사용량에 대한 요금납부는 매월 "공급자"의 지정일에 "공급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만약 지정일(납부 마감일)까지 가스요금이 미납된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9조 ②항의 가산금(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한 월 2%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연간 3회까지)을 미납원금에 부과한다. ② "공급자"는 요금 고지서를 요금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고지한다. ③ 도시가스 요금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요금제도 및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본 계약 제2조 ②항의 사용용도별 요금단가를 적용하며, 관계기관의 가스요금 고시가격 변동이 있을 시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9조 ②항에 따라 변동가격 적용일을 기준으로 요금에 반영한다.

제9조 ("공급자"의 안전공급 의무) "공급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수요자"에게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요자"의 준수 의무)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 임대, 상속, 경매 등의 사유로 "수요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요자"는 변경 발생 7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공급자"에게 "수요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이전 "수요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수요자"가 명의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일로부터 실제변경 기준일까지의 요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가스요금이 비정상적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 (가스공급의 중지 또는 제한)

